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024. 4.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27호로 2024년 4월 9일 남완현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 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4. 13. ~ 2024. 4. 17.):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 안 제3조제1항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2항2호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빗물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민·관 협력,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

## ○ 검토결과

-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폭우·가뭄 등으로 전국에 걸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17개의 자치구에서 빗물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빗물관리 관련 전국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	조례명
1	경기도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2	경산시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
3	경상북도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4	고양시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5	광주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6	광주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7	나주시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8	부산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9	양산시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10	영양군	영양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11	의정부시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
12	인천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13	인천시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14	전주시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15	창원시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16	포천시	포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17	화성시	화성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특히, 우리 구는 2022년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주택 등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2023년에도 문래동 상가 등이 침수되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홍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빗물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도시침수, 홍수 등의 재해는 구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침수·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 1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1)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1. (생략)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 8. (생략)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전문개정 2011. 3. 7.]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침투시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6.]

### 3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생략)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0.>

###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
-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2)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